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6. 5.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8,000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견책 상당) 통보 2명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 재개발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 위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전산장애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나

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미흡하게 실시하는 등 내규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조회·청구 등 관련 전자금융업무가

9시간 55분간 중단(2022.9.30.)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또한 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신규 서버 시스템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수행하는 등 내규 「서버운영 관리지침」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오픈 후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자금융업무(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계약조회 등) 중단사고가 2회(2022.9.30. 29분간, 2022.10.4. 210분간) 발생하였음

## (2) 프로그램 통제업무 위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될 전자금융 관련 프로그램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시스템 오픈 이후 약 3개월간(2022.9.13. ~ 12.14.) ①보험료 출금오류, ②보험금 중복지급 및 ③보험계약대출원리금 및 이자 출금오류 등 전산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음 (총 사고금액 약 10.4억원)

### < 관련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3.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4조 제5호
4.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9조 제6호